

## 2025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개방형직위의정홍보담당관 공개모집 공고

2025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개방형직위(의정홍보담당관)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 직급	임용 인원	계약 기간	담당업무
의정홍보 담당관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1명	2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 총괄 -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조정 - 의정보도 및 홍보자료 작성·제공 -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총괄 관리 - 의회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지원 등

###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0조(일반임기제공무원)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3조

### 3 임용기간

- 2년(임용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 4 응시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주소지·성별·연령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5 보수수준

### 가.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 고려 결정)

구 분	연봉상한액	연봉하한액
개방형 4호	-	68,106천원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나.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6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 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 요건을 심사

### 나. 2차시험 : 서류심사 + 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서류심사 : 지원심사, 경력증빙서류, 자기소개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능력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개인의 잠재능력 등 직무수행 요건에 대한 심층적 심사 및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가 산 점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 ※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고, 최종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별도 공고예정

## 7 시험일정

###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1. 24.(월) ~ 2025. 11. 28.(금), 18:00까지 /5일간
-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1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인사팀으로 연락바람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1층)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4782)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X)

### 나. 1차시험(서류전형) 형식요건심사 : 2025. 12. 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문(일정 안내 등) : 12. 5(금)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기검증 기술서」 작성 및 제출(별도 공고 안내)

### 다. 2차시험(서류+면접시험) : 2025년 12. 12.(금) 예정(대상자 별도 안내)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5분 내외) / 직무관련 면접(20분 정도)

###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년 12월중, 개별통지(별도, 공고 예정)

## 8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② 응시자격요건 응시자 의견서 1부(별지서식 2호)

③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3호)

- 응시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10천원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09:00~16:00/카드결제만 가능)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및 통상환증서(우편접수 시)가 없는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④ 이력서 1부(별지서식 4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5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도서식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작성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상 학력, 경력,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기술시 서류전형에서 감점처리될 수 있음.

⑥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업무분장 내부 결재 및 분장표 제출

-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⑧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①,② 모두 제출)

<p>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li> </ul> <p>②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해당연도 모두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세무서에서 발급가능</li> </ul>
--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⑩ 주민등록초본 1부(남여 모두 제출 : 병적사항 포함-남자에 한함)

⑪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⑫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⑬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 9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라.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내의 서류 이어야 합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

사.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추천자 중 차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및 업무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  
(☎ 063-280-4782)

**참고****직무수행요건 명세서****I.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3. 보직가능직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홍보담당관	일반직 또는 임기제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4. 주요업무내용			비 중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홍보 총괄 계획 수립 및 관리			20
2. 대변인 운영 및 활동계획 수립 및 지원			10
3. 의회 대외 공식 메시지 작성 및 지원			10
4. 언론 취재지원 및 취재동향 파악			10
5. 미디어홍보분야 홍보전략 수립			15
6. 의회 공식 SNS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10
7.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계획 수립			15
8. 도 주요현안 언론 모니터링			10
5.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 등에서 - 홍보, 공보 또는 취재, 편집, 보도 등 의정홍보분야 전반의 근무경력			
6. 필요지식 및 기술			
1. 지방의회 및 도정 현안에 관한 종합적 이해 및 대응능력			
2. 국내 언론 동향, 현안 및 분야별 취재동향 등 종합적 정보분석 및 대응능력			
3. 공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효과적인 공보방안에 대한 실행능력			
4. 정책홍보 및 다양한 홍보기법 등에 관한 지식			
5.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기법 등에 관한 지식 및 실행능력			

## II. 직무수행요건

임 용 자 격 요 건	
<b>1. 필수요건</b>	<p>①학력제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학력 요구수준 : )</p> <p>②필수자격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유 (종류 및 등급 : )</p> <p>③기타필수요건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 (요 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p>
<b>2. 경력 또는 실적요건</b>	<p>1) 경력요건</p> <p>(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p> <p>(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p> <p>(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p> <p>※ 관련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기업 등에서 홍보, 공보 또는 취재, 편집, 보도 등 의정홍보분야 전반의 근무경력</p> <p>2) 실적요건</p> <p>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정부산하기관, 민간단체, 대학 등에 근무하면서 공보, 홍보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p>

3. 능력요건	①전문가적 능력 i) 공보, 홍보 등 관련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 새로운 지식 및 정보 수집·분석 능력 iii) 종합적인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총20점
		7점
		7점
		6점
	②전략적 리더십 i) 의정 홍보분야의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 효과적인 의정홍보를 위한 전략적 사고 및 홍보전략 수립능력 iii) 홍보 활성화를 위한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총20점
		7점
		7점
		6점
	③변화관리능력 i)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능력	총20점
		7점
		7점
		6점
	④조직관리능력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노력 ii) 업무개선능력 iii) 자원활용능력	총20점
		7점
		7점
		6점
	⑤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i) 도민 공감대 형성 능력 ii)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총20점
		7점
		7점
		6점